

의안 번호	1733	【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1. 4. 30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4. 30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3.(목)

2. 제안이유

-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미지급용지”에 해당 하는 토지와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
-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보상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
- 보상금액 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도록 함(안 제16조)

4. 근거법규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
- 「사도법」 제4조(개설허가 등)
- 「건축법」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

5. 검토의견

- 종전에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이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와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토지보상 청구 요구를 받았을 때, 토지보상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판결에 따라 미지급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지급하여 왔음
- 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지급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, 행정낭비를 사전 제거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검토 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조례 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사항

○ 타 시·도 조례(규칙) 제정 현황

시·도명 (구·군)	조례명	제·개정일자
서울	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	1999. 1.30. (2019.10.10.)
서울 (강서구)	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	2007. 7. 9. (2020. 4. 9.)
인천 (옹진군)	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	2011. 9.26. (2017.12.26.)
충북 (청주시)	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	2014. 7. 1. (2017.12. 1.)